

법령·지침 등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 382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채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

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의 2제 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 표지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제18166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가건물안의 구분된 점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2003. 7. 18, 법률 제6925호)됨에 따라 상가건물의 구분점포별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시행 규칙중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210호
환경부령제149호
건설교통부령제383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중 기술인력에 관한 기준을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로 세분화하고, 기술자격을 대체할 수 있는 실무경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영향평가대행자 소속 기술인력의 퇴직 및 신규채용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의 제출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완화함(제6조제2항).

나.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중 기술인력에 관한 기준을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로 세분화하고, 기술자격을 대체할 수 있는 실무경력을 강화하며, 관련전공분야를 세분함

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중 종전에는 계급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력을 가진 교통직 공무원을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정한 경력을 가진 교통직 6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을 강화함(별표 1 제2호나목).

환경영향조사등에 관한규칙중개정령

환경부령제150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로건설 등 공사완료후 환경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시간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로 하던 것을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후 3년까지로 조정하는 등 대상사업별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시간을 정하는 한편, 대상사업에 대한 공사착공시기가 환경영향평가협의시기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서협의기관장으로 하여금 주변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인·허가 등을 행하는 승인기관장등과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조사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고시제2003-25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3.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5.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6.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7.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8.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9.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0.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11.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2.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13.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14.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15.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16. 경상남도양산시 도시철도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17.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 18.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19.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기한) 이고시중 제18호(부산항만공사에 대한감면)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자치부고시 제2002-25호(2002년 12월 28일)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03-37호

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대한수입금액계산시적용하는이자율고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4.2%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농림부고시제2003-52호

초지법 제2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초지조성비용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초지조성비용기준및대체초지조성비납입기준액

- 1. 초지조성비용 기준(1만㎡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3,944천원
 - 불경운초지 : 3,087천원
 - 입간초지 : 2,487천원
-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기준) : 7,853천원
 - 구 분 대체초지조성비 비 고
 - 초지조성비 3,944천원
 - 초지관리비 3,909천원
 - 계 7,853천원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농림부고시 제2002-61호는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하고 폐지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3-316호

2004년도과밀부담금산정을위한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별표2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위한표준건축비를 1제곱미터당 1,270,000원으로 고시합니다.

부 칙

이 표준건축비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정정

관보 제15559호(2003.11.29.)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법 제 처 장

관련조문	오류사항	정정사항	비고
제41조 제1항 제3호	3. 주민등록번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민등록표번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4 페이지 우란 상단 18행
제43조 제2항	② 사업주체는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한 날에 당해 주택을 취급 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② 사업주체는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한 날에 당해 주택을 취득 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35 페이지 우란 상단에서 14행
제85조 제1항	①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또는 기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1. ~ 4. (생략)	①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1. ~ 4. (생략)	54 페이지 좌란 상단에서 5행
제100조 제2항	②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 14. (생략)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 14. (생략)	59 페이지 좌란 상단에서 10행
[별표 13] 위반행위란 제3호	위반행위 3.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위반행위 3.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91 페이지 우란 상단에서 8행 및 9행